

# NEWSLETTER 881

October 27, 2023

##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긍정판정 후 본조사 개시 결정 -

무역위원회에서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대해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및 고시하여 관련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제정 이유

#### 1. 부과 이유 및 법적 근거

- 「관세법」 제53조에서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관세법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① 기획재정부장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가 시작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推計)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이하 이 관에서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1.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2. 제54조에 따른 약속을 위반하거나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검증 허용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정보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

- 무역위원회의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근거가 충분하고, 조사기간 중 발생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4개월간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하기로 결정

## II. 부과 대상

### 1. 부과대상 공급국

- 이집트

### 2. 부과대상 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 관세품목분류번호 : HSK 2523.21-0000

### 3.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 관세율
이집트	로얄시멘트(Royal El Minya Cement Co.) 및 그 관계사와 그 기업의 제출을 수출하는 자	72.23%
	그 밖의 공급자	72.23%

### 4. 부과기간

- 2023.11.00 ~ 2024.03.00(4개월)

## III. 의견 제출

### 1. 제출 기한

- 2023년 11월 6일

### 2.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제출처

- 주소: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화: 044-215-4432 / 팩스: 044-215-8076
- 이메일: michael80@korea.kr

## I 첨부 파일 (아래 파일명 클릭 시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붙임2] 기획재정부공고제2023-206호(이집트산 백시멘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정안 행정예고)

## I Contact



김동주 관세사

T 070-4353-1587  
E djkim@esein.co.kr



박수민 팀장

T 070-4353-5153  
E smpark2@esein.co.kr

# SEIN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3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